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9. 28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예결특위 상정 및 심사 의결
 - 상정 : 1999. 10. 8
 - 심사 및 의결 : 1999. 10. 9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가. 제안이유

-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
-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요청

나. 주요골자

-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결 산 액		
			세 입	세 출	잉 여 금
계	576,731,770	744,287,091	711,399,788	541,304,751	170,095,037

일 반 회 계	319,446,298	426,480,714	425.835.288	335,019,366	90,815,922
특 변 회 계	257,285,472	317,806,377	285,564,500	206,285,385	79,279,115
공기업특별회계	215,652,192	273,189,493	242,923,390	191,162,136	51,761,254
기타특별회계	41,633,280	44,616,884	42,641,110	15,123,249	27,517,861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생략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213호
의결년월일	99. 10. 12 (제73회)

제출년월일 : 1999. 8. 2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4조(결산)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 98년도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승인근거

1.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견서 제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대표위원 이강인

위 원 이원재

위 원 서대철

위 원 정길영

위 원 박해울

<총 평>

○ 결산검사 주관 부서의 변경 검토

결산은 의회가 심의 확정해 준 자치단체의 전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검사하고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또한,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부수적인 효과로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중 현실적으로는 차기 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그간 관행적으로 회계과에서 결산검사업무를 주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산담당부서(행정기획실)가 주관부서로 자리 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 보조금 정산 철저

국·도비, 시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의 정산에 보다 합리적이고 통일된 시책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각 담당부서가 일정한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 일상경비 장부처리에 만전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결산검사 결과 동사무소 및 각 구청과 본청의 실·과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인정되나 보건소 및 시립도서관 등 외부기관의 경우에는 아직도 장부작성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소 및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본청 회계과에서 지도감독 해야 하나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지도감독이 부실하여 장부의 작성 및 자금배정, 자금집행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미숙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청 및 구청의 경리계에서는 관할 내에 있는 담당기관의 회계장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회계직에 대한 위상강화를 위

하여 내부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기금관리의 철저화

각 과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관리대장이 없거나 일정한 규격이 없이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히 결산서만으로는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종 기금을 적립만 하고 기금의 목적에 따른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각 기금 관리부서의 관리대장을 규격화하여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1.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세입예산액 576,731,77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1,399,787,558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44,287,091,330원(전년도 이월금 167,555,321,33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41,304,750,851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70,095,036,70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70,095,036,70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2,846,213,070원
 - 사고이월 22,828,668,630원(1,000,000,000원)
 - 계속비이월 38,794,597,37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26,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599,457,637원이다.

2. 1998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액 319,446,29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5,835,288,37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26,480,714,000원(전년도이월금 107,034,416,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35,019,366,47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90,815,921,90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90,815,921,909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732,080,080원

- 사고이월 4,829,093,030원(1,000,000,000원)
- 계속비이월 38,794,597,37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12,42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47,730,429원이다.

3. 19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 세입예산액 257,285,47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5,564,499,17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17,806,377,330원(전년도 이월금 60,520,905,33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06,285,384,381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79,279,114,79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79,279,114,798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5,114,132,990원
 - 사고이월 17,999,575,60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3,67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151,727,208원이다.

4. 19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 세입예산액 41,633,28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641,109,892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4,616,884,000원(전년도 이월금 2,983,604,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23,248,89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7,517,861,00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27,517,861,002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28,923,000원
 - 사고이월 254,468,92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3,67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20,790,082원이다.

1) 주택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45,69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64,72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5,69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3,776,18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2,788,54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32,788,54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88,549원이다.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0,194,64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52,009,16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0,194,64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9,438,303,86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3,705,3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3,705,3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3,67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00원이다.

3)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232,74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6,835,155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32,74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000,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46,835,15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46,835,15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835,155원이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2,193,50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56,701,48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2,763,428,000원(전년도 이월금 569,923,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739,647,29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1,917,054,19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1,917,054,19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28,923,00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88,131,199원이다.
- 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786,85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8,308,706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86,85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86,615,74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81,692,96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581,692,966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692,966원이다.
- 6) 교통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8,061,8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44,714,338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9,319,091,000원(전년도 이월금 1,257,291,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569,162,44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475,551,89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5,475,551,898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254,468,92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21,082,978원 이다.

7)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0,118,03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05,976,315원이며
- 세출예산액 11,274,429,000원(전년도 이월금 1,156,390,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955,743,38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9,350,232,93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9,350,232,93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50,232,935원이다.

<세입분야 결산검사 검토사항>

□ 개 요

○ 세목별 세입분류

(단위: 억원)

세 목	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오납반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구성비
주 민 세	406.8	260.4	2.7	4.8	141.6	38.9
재 산 세	113.8	96.2	0.4	0.3	17.3	4.7
자 동 차 세	473.0	356.9	0.4	1.8	114.3	31.4
담 배 소 비 세	326.2	326.2	-	-	-	-
종 합 토 지 세	192.2	125.0	2.0	0.1	67.1	18.4
도 시 계 획 세	147.3	125.2	0.3	0.2	21.9	6.0
사 업 소 세	30.8	28.6	0.2	0.1	2.1	0.6
합 계	1690.1	1318.5	6.0	7.3	364.3	100

○ 세목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억원)

세 목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부도 및 사업부진	계
주 민 세	52.6	-	17.1	-	20.6	51.3	141.6
재 산 세	-	2.2	1.2	0.3	0.7	12.9	17.3
자 동 차 세	12.1	20.4	10.2	15.3	30.7	25.6	114.3
중 합 토 지 세	11.4	0.8	2.0	3.3	0.6	49.0	67.1
도 시 계 획 세	4.1	1.1	1.1	0.8	0.2	14.6	21.9
사 업 소 세	0.3	0.2	-	-	0.2	1.4	2.1
합 계	80.5	24.7	31.6	19.7	53.0	154.8	364.3

- 세목별 세입금을 살펴보면 98년 미수납액 총액은 364.3억원으로 97년 262.2억원에 비해 39%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니다.
- 이를 위해 세목별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98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부도 및 사업부진 항목이 154.8억원으로 전년도 1.5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 바, 이는 IMF 관리체제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환경의 악화 등에 기인한다고 사료되나 이 금액의 대부분이 차년도에 가서는 결손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므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체납세액의 민간위탁 관리 검토〉

- 98년 결산일 현재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423억원이고 이 중 약 10억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1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상태임.
- 체납세액의 관리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할 때 그 효과성도 높아진다고 판단되며, 현재 체납세액 징수액의 5%를 담당공무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나,
- 최근 전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회하고 수금까지 대행하여 주는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수행회사(신용정보회사)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간 전문기관에 체납세액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자금관리〉

□ 현 황

○ 특별회계는,

- 공기업특별회계 : 공영개발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가 운영되고 있고,
- 결산일 현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보유자금 총액은 93억원이며, 이 중 시금고인 농협에 60억, 한미은행에 39억이 예치되어 있음.

○ 각 회계별 보유자금의 예치기관 선정의 근거로는 97. 1. 1부터 99. 12. 31까지 현 시금고인 농협과 체결한 "금고업무취급계약서"가 있으며, 동 계약서 제3조(금고취급업무)에 의하면,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다."고 명시됨.

□ 문제점

○ 한미은행에 예치한 39억원은 "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시금고가 청구하는 경우 우리 시의 마땅한 대응논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짐.

□ 개선방안

○ 당해연도말로 금고계약서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향후 새로 작성되는 "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현재 한미은행에 보관 중인 정기에금 39억원을 해지하고 시금고로 조속히 예치할 것이 요구됨.

<임차재산의 채권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IMF에 진입하여 일반경제의 부도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에 따라 부천시가 임차한 재산에 대한 채권부족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부천시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19건에 6,571,000,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소사동 동사무소 건물의 경우에는 채권부족액이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 있으며 다른 임차재산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임차재산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건물에 대한 전세권만을 설정한 곳도 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통상의 임차재산에 대하여는 전세권의 설정시에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설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경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다면 낙찰가액은 건물과 토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채권확보의 측면에서 담당재산관리관은 연간 일정시기 또는 필요한 시기에 채권확보 가능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는 기금>

□ 현 황

- 1998년 12월말 현재로 본청 회계과 및 각 구청 경리계에서는 잡종금 성격의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청 회계과의 경우에는 약 90억원, 원미구 약 16억원, 소사구 약 3억 5천만원 및 오정구 약 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동 세입세출외현금은 대부분 소득세 원천징수분 및 입찰보증금 등 잡종금이나 일부의 경우에는 도비 보조분의 기금이 있으며, 부천시의 자체세출로 조성된 기금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동 세입세출외현금은 예산 외로 집행되는 것으로 잡종금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자금의 관리이므로 관리체계만이 중요하나 기금의 경우에는 해당부서가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부천시의 예산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지출 즉시 정상적인 기금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선방안

- 세입세출외 현금은 최소한의 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가능한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정상적인 세입과 세출로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세목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히,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을 관할하는 담당부서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성격상 세입세출외로 관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건강진단 수검시 소사구보건소 적극 이용 권장>

□ 현 황

- 부천시 관내 3개 보건소 중 소사구보건소만이 98년도부터 종합건강진단기관으로 등록되어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이에 대한 진단비용을 청구하여 받고 있는 실정.
- 98년도 실적은 총 80건에 11,283,080원의 종합건강진단비로 세외수입을 올렸음.

□ 권장사항

- 부천시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종합건강진단 수검시 소사구보건소에서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부천시 세외수입에 기여하도록 조치 요망

<보건소 세외수입 결산 미흡>

□ 현 황

- 현금 수납분야

각종 진료, 민원증명 등 수입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 각 보건소 공히 민원실 1명의 직원이 현금 수납 후 수기 일일결산을 하여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익일 시금고에 불입하고 있음

○ 진료비 청구분야

- 일일 160여 건(연간 50,000건 6억 7천만원)에 대한 진료비 청구에 있어 본인 부담금은 매일 민원 담당공무원이 현금 징수하고 시금고 불입은 익일 또는 수일간씩 지연 불입하고 있음.
- 진료비 청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급하여 수천건씩 각 의료보험기관에 청구하여 각 의료보험 기관에게 심의결정 후 통보된 금액만 통장에 입금하고 있음. 또한 입금일을 징수결정일로 적용하여 수입처리하고 있음.

○ 징수부 정리분야

- 과징금 부과 징수결정일 및 수납일 등이 장부와 상이
- 진료비 청구 금액 및 수입 시금고불입 등이 장부와 상이 및 미기장
- 현업부서의 부과 징수 결정액 장부정리 통장잔액 등 상이
- 각 구 보건소별 일일결산서식, 내용 등 상이 및 결산미흡

□ 문제점

- 현금의 부과징수 일일결산 및 시금고 불입 등 모든 업무를 민원담당 공무원 1인이 처리하고 있어 1일 평균 160여 건의 진료비 등의 현금수납에 안전조치가 미흡하며 진료실 등 각 현업 부서와 수납 담당공무원간의 일일결산 확인 절차가 결여되어 있음
- 진료비 청구의 징수 결정일은 민원인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날(자부담 납부일)로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1일 160여 건의 진료비를 매일 징수결의하여 의료보험기관에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한 달에 1회씩 소급 징수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금액 중 심사 후 삭감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뒤 수일간씩 지연 불입되었음.
- 징수부 정리 및 결산에 있어 진료비 청구금액과 수납금액이 상이하고 현업부서의 부과징수 결정일 및 수납일과 장부정리 내역 및 통장의 일자별 잔액이 상이하는 등 결산검사가 난이함.

□ 개선방안

▶ 현행제도하에서의 개선

- 일일업무추진실적표(현업부서) 및 일일결산집계표 서식보완(일일건수 및 금액기재 등)
- 수입일계표와 현업부서 업무추진실적표와 대조 확인
- 민원증명수수료,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과징금 등 일일결산집계표와 수입금 출납원과의 업무유기적 기능 확대
- 진료비 청구, 징수결정에 관한 개선사항 연구개발

▶ 진료업무 및 수납업무의 전산화(과제)

- 현 황

1일 평균 300여 명의 진료관련 민원인에 대한 관련서류 및 수납, 청구 등을 일일이 손으로 작성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잡무로 인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짐

○ 개선방안

- 진료(내·외과, 실직자, 한방, 치과) 관련업무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들고 다니는 불편없이 접수, 진료처방, 투약 등이 한번에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운용
- 전산화 내용(예)
 - 환자차트관리 및 처방전 발급
 - 접수, 수납, 일일통계
 - 약품수발 및 재고파악
 - 진단서 등 각종 서식 발급
 - 건강진단수첩 및 카드 발급
 - 보험청구 등

○ 기대효과

- 회계 처리의 투명성 확보
- 효율적인 환자관리로 자료수집 및 분석으로 보건지표 작성 용이
- 신속한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세출분야 결산검사 검토사항〉

□ 예산의 연도말 집행의 집중문제(공통사항)

예산의 연도말 집행의 집중도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일부사업의 경우(예를 들면 보안 등 보수공사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에 있어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었음.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물론이고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예산지출액에 대한 영수증 수취 현황(공통사항)

- 지속적인 감사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나
 - 오정구 관내의 경우 관내업소의 영세성 등 애로가 있다고 하나 다른 구에 비해 급양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 오정구보건소의 경우 차량수리비로 1,139,000원을 지급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수령함
 -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도 이사용역비로 1,870,000원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령함
 - 의회사무국의 경우 환경정화사업용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6,000,000원을 간이영수증을 수령함
- 이 경우 자유직업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음

<보건소 의료비 지급건>

□ 현황 및 문제점

오정구 및 소사구보건소의 경우 매년 4월경 입찰이 시행되어 구입단가가 결정되고 난 후약품구입이 실행되는 관계로 5월과 12월에 약품구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즉, 당해연도말에 차년도 4월까지의 소요량을 일괄 구입함으로써 연도말에 파다한 약품재고를 보유하게 됨.

□ 개선방안

매년 4월에 이루어지는 입찰단가의 유효기간을 차년도 입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로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월간 약품수급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3개 구청 산하 15개 동사무소 직원용으로 구내식당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총 62백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이 중 25백만원이 98년도 예산으로 지출되었음.
- 결산검사일 현재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보면 총 15개 동사무소 중 4개 동사무소가 운영 중단된 상태이고 나머지 동사무소의 경우도 실질적인 직원이용보다는 일시적인 간식 조달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최초 예산배정시에는 직원 이용용도 등으로 구상하였으나 기구축소 등으로 인원이 감축됨으로써 경제성이 떨어져서 식당운영자가 없기 때문임.

□ 개선방안

- 향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금액은 물론이고 사업의 경제성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없애야 하고 기왕에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그 사업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과감히 불용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일상경비장부의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결산검사 결과 동사무소 및 각 구청과 본청의 실·과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보건소 및 시립도서관 등 외부기관의 경우에는 아직도 장부작성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건소 및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본청 회계과에서 지도감독해야 하나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지도감독이 부실하여 장부의 작성, 자금배정 및 자금집행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미숙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본청 및 구청의 경리계에서는 관할 내에 있는 담당기관의 회계장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회계적에 대한 위상 강화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인쇄비의 과다지출〉

□ 현황 및 문제점

- 1998년의 부천시외의 신문 등 언론사 출판물 구입은 1,307건에 총 112,370,7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상당부분이 신문 등에 대한 지출로서 신문 등에 대한 중복지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998년에는 IMF에 진입한 시기로서 세입의 감소 및 세출의 절약이 중요한 이슈가 된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나친 동일 출판물에 대한 지출은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오정구의 경우에는 원미구와 소사구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었으며 따라서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각 실·과 등에서는 인천연감 등을 구입할 경우에 해당출판사에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처리는 세무서에 대한 수입금액의 누락신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세수누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개선방안

- 본청 및 각 실·과 등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지출이 부천시 전체적으로 매우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서 자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출판물과 기타 출판물을 구분하여 출판물에 대한 지출을 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 실·과의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출판물의 구입수량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신문 등 출판물은 면세재화로서 발행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가능한한 계산서를 받아서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신고시에 같이 신고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관 관련 개선사항〉

★ 세입관리

□ 현황

- 현재 복지관의 장부관리 상태는 장부의 정리시 현금출납부와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시재금으로 인하여 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감독기관인 시의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시에 확인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세입의 경우에 수납자와 고지자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현금의 탈루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복지관의 경우에 회계담당자 및 관리자가 장부의 관리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회계 및 현금의 관리시에도 중요한 내용 및 점검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지도감독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정산 외에 관할 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복지관의 성격이 회계 등 일반관리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조금 정산

□ 현 황

-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중 국·도, 시·군비 보조금 및 자부담금 정산에 있어 각 복지관별 정산내역이 상이하고 보조금 정산에만 치중하고 자부담금 수입에 대한 정산이 미흡함.

□ 문제점

- 장부 정리내용과 잔액증명 정산서 내역 등이 결산상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부담 금액에 관한 정산 내역이 미흡함.

□ 개선방향

- 사회복지회관 지도감독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에 관한 통일성 및 자부담금 정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자부담금 부담율의 타당성 검토, 미정산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 처리 등 지도감독 및 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보조금 결산이 확행되도록 조치요망.

★ 보조금 운영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관 98연도 사업예산 중 시설비목에 대한 사업예산 비교

최초 편성예산	추가경정예산	차 이
45,535천원	262,137천원	216,602천원 증가
1. 옥상누수방수공사	1. 옥상누수방수공사 2. 재활의학진료실 이층창 설치 3. 지하 휴게실 보일러실 배기 시설 4. 내부 페인트 공사 5. 건물외부 안전망 설치 6. 냉동기 오일교체 및 보일러 정비 7. 도시가스 배관공사	19건 증가

-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대기자 프로그램실 바닥공사 9. 회의실 버티칼 설치 10. 단지 내 포장공사 11. 물리치료실 칸막이 공사 12. 법면공사 13. 진료실, 상담실, 심리검사실 커튼 14. 지하펌프 설치 15. 내부 노후배관 교체공사(1억) 16. 주차장공사(2천7백만) 17. 외부도색 18. 자원봉사자실 바닥장판 설치 19. 문서고 보관용 앵글제작 20. 기타(9백만) | |
|--|---|--|

⇒ 시설비의 특성상 긴급한 공사는 예외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이 가능함에도 최초 계획 시보다 무려 5배 이상의 금액에 건수도 19건이나 증가 편성한 것으로 미루어 반드시 필요한 공사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 옥상누수 방수공사, 관내 페인트공사의 경우 금액이 5천만원에 달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5백만원의 탈세를 조장하는 등 공적기관의 자금집행인에게 요구되는 관리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었음.(장애인 복지관)

○ 세입분야로는 물리치료실 등(장애인복지관), 예식장, 수영장 등(삼정복지관)에서 이용료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 영수증이 일련번호순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수입의 완전성을 제3자가 검증하기가 곤란하고(삼정복지관),

⇒ 현금관리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부통제절차의 하나로 현금출납업무와 기록업무를 분리하여야 함에도 복지관의 경우 1인이 모두 수행하고 있어 현금사고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되고, 모든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제 이용료수입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일련번호순으로 편철되도록 하고 현금수금자와 수금기록자를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분야

□ 현 황

○ 부천시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위탁운영관리협약서 제6조(운영비)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운영비)“갑”과“을”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사업비 조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갑”은 제6조(이는 제5조의 오기로 보임)의 사업승인에 대한 운영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을”에게 분기별 분할 보조한다

②“을”은 운영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③연간 운영비의 산출은 “갑”이 “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 결정한다.

○ 그리고 위의 위탁운영관리협약서 작성근거인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운영관리) 회관은 부천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을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운영비) ①제4조 제3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회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 문제점

○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14조(수당 및 운영비)에 따르면 제4조 제3호의 업무, 즉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이 경우 보조비율은 8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으나 동조제2항에서 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회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근거했다고 사료되는 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관리협약서상의 운영사업비의 20% 이상을 수탁법인이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탁법인의 “자부담” 비율결정에 있어서 “자부담”을 수탁법인이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출연하라는 의미인지 또는 이 경우 회관 운영 수입금 및 후원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개선방안

○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14조(수당및운영비)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그 합목적성을 살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관리협약서 제6조(운영비) 규정 중 “자부담”에 대해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본청의 업무추진비>

□ 현 황

- 본청의 총무과에서는 전반적인 기관의 공통업무추진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관의 업무추진비 처리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내부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미묘한 경비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따라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자가 기안을 하여야 하나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실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담당자가 기안을 하여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추후의 관리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기금 관리와 운용 및 통제장치 미비>

□ 현 황

현재 부천시의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현황은 붙임 1과 같다.

붙임 1 : 98. 각종 기금 관리 현황

□ 문 제 점

- 현재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가 기금관리통장과 사인(舊계장인 담당의 도장), 공인인을 모두 소지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각 기금 관리부서에 관리대장이 없거나 일정한 규격이 없이 제각각인 관계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각종 기금을 적립만 하고 있고 기금의 목적에 따른 사용실적은 거의 없는 형편임.

□ 개선방안

- 각 과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 관련 통장은 담당자가, 사인은 담당 계장이, 공인은 운용관인 국장(또는 과장)으로 나누어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함.
- 각 기금 관리부서의 관리대장을 규격화하여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이 적극 활용되도록 운용할 것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1997년도까지 기금으로 결산된 사실이 없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108억원이 98년도 결산에 관리

운용되고 있으나 수년간 관리대장 등 제반서류가 비치되지 않고 다만 예금통장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었음.(현재는 98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으로 관리됨)

-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씩 출연하여 5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조치된 것이나 현재 까지 출연한 총 108억(이자포함)원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 운용되고 있지 않았으며 일반 회계에서 출연 당시 목적(중소기업 용자)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

□ 개선사항

-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당시 목적과 조례규정에 의한 목적(용자, 이자차액보전, 기타)에 육성기금이 활용되어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관리대장 정리, 자금 관리 운용 철저 등 결산에 따른 제반 문서를 정비하여야 할 것임.
- 현행 조례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관리>

□ 현 황

현재 부천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지원규모는 붙임 2와 같다.

붙임 2 : 정액보조 및 임의단체 연간 지원 규모

□ 문 제 점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를 받는 단체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규모와 자기자본 부담 액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사업집행 완료 후 지체없이 정산내역서와 증빙서류 및 사업실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인원의 부족으로 정산이 제때에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부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된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서 일부만이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부천시 체육회를 통하여 각 구청과 동사무소로 지원된 '제25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의 경우 각종 지출증빙서류 중 일부를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보조사업의 집행 후 관리의 취약성이 심각하였음.
- 예충 부천시지부의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1000만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는 등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음.
-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과 정산방식에 있어서도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부서의 담당자마다 제각각 처리하고 있었음.
- 특히 사업비 명목으로 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부 단체의 경우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 개좌가 없이 자부담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현금출납부 정리가 소홀하거나 대부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고 있고 정산기일이 지연되는 등 전반적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다.

□ 개선방안

-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각 담당부서가 일정한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
-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보조금 집행시에 사전 교육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집행 및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1)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 첫째 - 보조사업의 수입 지출은 반드시 보조금 별도계좌를 통하여 통장 관리할 것.
- 둘째 -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금전출납부 기록을 의무화할 것

2)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 첫째 - 지출증빙서류(영수증)에 반드시 영수인 날인을 확인할 것
- 둘째 - 일반과세자일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과세특례업소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할 것
- 셋째 -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와 인건비 지급시 계좌입금할 것. 단, 영수증은 별도 제출할 것

3)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 첫째 - 정산은 자기자본부담액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제출할 것
- 둘째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등)의 사본을 필히 첨부할 것
- 셋째 - 보조 사업 관련 각종 자료(팝플릿 등)와 사진 등 소명 자료를 최대한 첨부할 것

<불필요한 각종 용역사업 억제>

□ 현 황

○ 98년도에도 각종 용역사업이 미활용되는 사례가 여전했다. 특히 학술연구용역에 있어서 '부천시 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 203,785,000원을 들여 용역 결과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중단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 98년에 각종 용역비 집행 후 미활용된 사업은 불임 3과 같다.

불임 3 : 98. 설계·용역 후 미활용 내역

□ 개선방안

○ 각종 연구용역 및 기본/실시 용역시 당해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통하여 미활용되는 용역이나 과도한 용역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여야 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연말 예산집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오정구에서 12월에 발주한 공사 현황을 보면 11건에 총 계약금액이 80,717,800원으로 주로 각 동의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콘크리트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하수관 신설 공사로 이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연말에 몰아서 시행한 것으로 보여짐.

붙임 4 : 98. 12월 중 공사 발주 현황

□ 개선방안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가급적 서둘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것

<각 동의 여유자금 과다>

□ 현 황

- 각 동으로 배정되어 사용 후 남은 98년 월별 평균잔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붙임 5 : 98. 과·동별 일상경비 잔액 현황

□ 문 제 점

- 각 동으로 배정된 각종 사업예산이 집행 후 잔액 반납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각 동마다 1000만원 정도씩 보통예금 통장에서 저리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잔액반납을 월별로 확인하여 보다 높은 금리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계약방식의 개선>

□ 현 황

-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
- 위탁운영 대상기관
 - 환경관리공단 및 동 공단이 출자한 법인
 -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시공한 자
 -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자
- 전국 소각장별 운영비용 비교(97년/200톤 소각장)

시 설 명	톤당처리비	운영주체	시설명	톤당처리비	운영주체
창 원	29,742	한라중공업	성서	51,611	환경관리공단
중 동	32,063	(주)대우	다대	40,729	"
평 촌	33,195	동부건설			"

• 톤당 처리비용은 전국 5개 소각장 중 2위로 비교우위는 가지고 있으나,

• 동급 처리시설 기준을 운영하면서도 소각장간 처리비용 편차가 큰 것으로 미루어 적정 운영비용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중동 소각장의 위탁방식 내용 검토

• 위탁기간 : 97. 1. 1 - 99. 12. 31

• 위탁방법/업체 : 수의계약/(주)대우

• 위탁관리비용의 산정방법

: (주)대우가 소각장 운영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용의 10%를 이윤으로 가산하여 매월 정산 지급

• 정산 : (주)대우는 1년 단위로 발생경비에 대한 증빙확인을 산동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함

□ 문 제 점

○ 위탁기관 선정

• 공개경쟁을 통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 방법을 체결함으로써 위탁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

○ 위탁관리 비용 산정방식

• 실제 발생경비의 10%를 이윤으로 보장하는 현 방식은 불필요한 경비를 과다하게 발생시킬 가능성이 강하며 저출경비가 많을수록 기업의 수익금이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있다고 하나 그것은 실제 발생경비에 대한 증빙이 있다는 확인서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발생경비의 크기가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문제임.

• 이것은 감사를 통하여서도 적발할 수 없는 통제 곤란한 계약방법상의 문제라고 판단됨.

○ 수탁업체의 업무 책임한계

• 폐기물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은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기술성을 활용,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능 축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 소각장 입지의 부적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여러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책임은 여전히 시가 부담하고 있는 바,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관리 담당조직만 민간기업으로 변경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짐.

○ 위탁관리기간

- 폐기물 처리업무의 특성상 운영관리 기법 등의 노하우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항이나,
- 현행 위탁기간 3년은 그러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활용하기에는 짧다고 판단됨.

□ 개선방향

○ 위탁기관 선정

- 당해연도말 (주)대우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차기 위탁업체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위탁관리 비용 산정방식

- 입찰 전 톤당처리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 외부환경요인에 따라 운영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수도권매립지 사용을 타시·군에서 거부하는 경우 대체 매립지를 사용하는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며, 환경오염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력비 등은 상승할 것임)를 현실적으로 업체에 전적으로 부담시키기 곤란한 실무적인 애로 등이 있으므로,
- 발생경비를 전력비, 공과금, 보험료 등 효율적 업무운영과는 관계가 적은 비용(정산비)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수탁업체의 업무 효율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큰 비용(비정산비)으로 구분하여,
- 정산비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의 이윤을 보장하고 비정산비는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대체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됨(양천소각장의 경우 최근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주)선경이 위탁업체로 선정된 사례도 있음).

○ 수탁업체의 업무 책임한계

- 소각장 운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민원 등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위탁관리기간

- 축적된 노하우의 최대활용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장기화(5년 이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동사무소/구청 경비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심곡3동

- 읍면동표준경비 : 자금잔액이 충분함에도 자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 평균잔액이 상승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음.

○ 역곡1동

-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보조금 정산 : 1/4분기 정산서에 2/4분기 증빙을 첨부함. 형식적인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짐.
- 결식아동돕기 성금 : 수혜자 본인 또는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후원회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성금의 최종수령인이 결식아동이라는 사실을 제3자가 알 수 없었음.
- 경로당지원금 :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었음.

○ 중동

- 4~5건의 시설공사(금액 약 1천만원 정도)를 발주하면서 새마을협의회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로알종합광고 1개 업체에 모두 수의계약 지원한 사례가 있었음.
- 경로당환경개선사업 : 4/11 4,180,000원 지원하였으나 노인회에 무통입금한 증빙만 있을 뿐 공사 관련 증빙 및 사업체에 대금지급한 내역이 불비됨.

○ 중4동

-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 2/4분기 자금배정은 5. 13일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금은 8. 4일 지연 지원된 사례가 있음.

○ 원미구 사회복지과

- 수용비 : 자금잔액이 충분함에도 습관적으로 자금청구하여 평잔이 상승하였음.
- 여비 : 월평균 3회 지급하였으나, 12월에는 9회 지급되어 배정예산을 다 써버리려는 의도가 엿보임.

○ 원미구 지역경제과

- 수용비, 여비 : 연말 지출액이 타월에 비해 상당히 과다하였음.

○ 소사구 범박동 / 소사구 건설과

- 목별 자금잔액이 충분함에도 자금청구한 사례가 있음.

○ 원미구보건소

- 초과근무수당 : 98. 10월분 샘플하여 초과근무일지상에 나타난 초과근무시간과 실지금액의 정확성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틀리게 계산됨. 회계담당자의 철저한 업무교육이 요망됨.

○ 중앙도서관

- 세입 징수부 기재가 부실함. 징수액과 수납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에도 수납액은 전혀 기록되지 않음.

○ 공보실

- 광고료 : 중부일보, 한성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에 동일한 크기로 광고를 하였는데 3월에는 1,1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 7월에는 2배 비싼 2,200,000원을 지급하였고, 광고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도 없고 광고사이즈별 가격표도 없고 이른바 달라는 대로 주는 식으로 운영함.

○ 청소과

- 수용비 : 자금잔액이 없음에도 자금을 지출한 사례가 있었음.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회계전문직 공무원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96. 7. 1일부로 공기업으로 전환된 하수도사업소는 올해 세번째 결산을 실시하였으나 공기업에 속 달된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로 공기업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임.

○ 또한, 회계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사업개시 후 결산일까지 2년 반 동안 4번의 인사이동으로 평균 약 7개월의 매우 짧은 보임기간임) 때문에 공기업의 육성, 발전상 전문화가 어려운 상태이고 아직 까지 공기업회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옛날 특별회계 당시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장부 기장상 발생주의에 따른 기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회계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결산과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변칙운영을 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을 두어 장기근속을 보장함으로써 공기업회계의 전문성을 꾀하고 또한 공기업 전문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지도,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한편 공기업회계의 예산 관리, 회계처리 등이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붙임 1】

98. 각종 기금 관리현황

(단위 : 원)

기금의 종류	담당 부서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고
합 계		17,029,977,041	3,852,900,706	20,882,877,747	
장 학 기 금	총무과	1,082,499,940	493,922,750	1,576,422,690	
재 해 대 책 기 금	민방위재난관리과	-	290,731,000	290,731,000	
재 난 관 리 기 금	민방위재난관리과	-	192,889,000	192,889,000	
도 시 가 스 수 요 가 기 금	지역경제과	707,250,636	67,422,973	774,673,609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기업지원과	9,044,097,000	1,851,862,718	10,895,959,718	
자 립 장 학 기 금	시민복지과	549,559,330	-912,950	548,646,380	
노 인 복 지 기 금	여성복지과	1,040,957,020	126,228,670	1,167,185,690	
문 화 예 술 발 진 기 금	문화체육과	2,544,687,900	303,877,100	2,848,565,000	
체 육 진 흥 기 금	문화체육과	1,606,983,835	359,545,904	1,966,529,739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 변 영 향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청소사업소	453,941,380	167,333,541	621,274,921	

【붙임 2】

98.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정액)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총 계		1,493,590	
본 청 계		1,342,080	
지 방 문 화 원	○ 지방문화원사업지원	567,586	
체 육 회	○ 체육회사업지원	651,462	
상 이 군 경 회	○ 상이군경회사업지원	10,000	
전 물 군 경 유 족 회	○ 전물군경유족회사업지원	10,000	
전 물 군 경 미 망 인 회	○ 전물군경미망인회사업지원	10,000	
대 한 무 공 수 훈 자 회	○ 대한무공수훈자회사업지원	10,000	
바 르 게 살 기 위 원 회	○ 바르게살기위원회사업지원	19,450	
새 마 을 협 의 회	○ 새마을지회사업지원	63,582	
원 미 구 청		66,660	
새 마 을 협 의 회	○ 새마을지회사업지원	38,700	
바 르 게 살 기 위 원 회	○ 바르게살기위원회사업지원	19,960	
노 인 회	○ 노인회사업지원	8,000	
소 사 구 청		49,000	
새 마 을 협 의 회	○ 새마을지회사업지원	24,000	
바 르 게 살 기 위 원 회	○ 바르게살기위원회사업지원	17,000	
노 인 회	○ 노인회사업지원	8,000	
오 정 구 청		35,850	
새 마 을 협 의 회	○ 새마을지회사업지원	16,800	
바 르 게 살 기 위 원 회	○ 바르게살기위원회사업지원	11,050	
노 인 회	○ 노인회사업지원	8,000	

98.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임의)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지 원 액	비고
총 계		280,752	
본 청 계		263,478	
자 유 수 호 총 연 맹	○ 제16회 지부장기 체육대회	4,950	
	○ 조적요원지도자대회	2,285	
	○ 자유수호통일강좌	1,560	
	○ 소외계층안보교육(제3땅굴)	1,600	
	○ 부천시장기안보사격등반대회	1,240	
	○ 고교생자유민주통일교육	2,000	
	○ 자유수호옹변대회	1,200	
민 주 평 통 부 천 시 지 회	○ 운영비	7,000	
부 천 시 이 북 도 민 회	○ 경로위안잔치	1,000	
Y M C A	○ 광복53주년기념행사 및 영화제	5,000	
	○ 소비자피해구제	4,950	
(사)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 제6회자연보호운동글짓기그림그리기	6,924	
	○ 제6회자연보호학생옹변대회	1,018	
(사)한국미술협회부천시지부	○ 98. 부천미술사랑전	5,000	
코리아엔젤스민속무용예술단	○ 결식아동돕기전통민속예술공연	3,000	
한국연극협회부천시지부	○ 제16회 전국연극제 출전보조	1,000	
	○ 98. 송년연극제	3,000	
부 천 시 민 국 악 사 랑 회	○ 실업극복기금마련 98. 명인명창전	3,000	
한 국 연 예 인 협 회 부 천 시 지 부	○ 추석맞이시민위안잔치	9,880	
한 국 국 악 협 회 부 천 시 지 부	○ 98. 문화의달 기념 국악제	2,000	
부 천 시 수 석 연 합 회	○ 98. 수석연합회 전시, 석보제작	2,000	
부 천 시 기 독 교 청 년 회	○ 부모교육시민공개강좌	800	
부 천 지 역 경 제 발 전 협 회	○ 부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운영보조금	40,000	
한 국 부 인 회 부 천 시 지 회	○ 소비자피해구제	15,000	

단 체 명	사 업 명	지 원 액	비고
Y W C A	○ 소비자피해구제	4,950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	○ 수해복구봉사활동보조금	1,900	
한얼용사촌특별지회	○ 체육활동보조금 및 단체운영비	12,000	
장애인단체협의회	○ 장애인단체사무실운영비	30,000	
부천시광복회	○ 사무실운영비	4,000	
(사)지체장애인협회	○ 제11회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참가비	1,500	
부천시재향군인회	○ 6.25제48주년기념행사	10,000	
춘의사회복지관	○ 독서실운영비보조금	3,0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천시지회	○ 운영보조금	8,000	
(사)한국만화가협회	○ 98. 부천시만화축제행사비지원	5,000	
만화동아리아기마을	○ 회지창간호발간에따른지원	1,000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	○ 영화제준비보조금	40,216	
실업극복부천시민부 운동본부	○ 운영보조금	15,605	
한국노동경제기 도부천시지부	○ 경기도근로자체육대회출전보조	900	
구 청 계		17,274	
원 미 구 청 소 계		5,000	
민주평통원미구지회	○ 운영비보조	3,000	
자연보호원미구협의회	○ 자연보호활동전개	2,000	
소 사 구 청 소 계		4,274	
민주평통소사구지회	○ 운영비보조	2,274	
자연보호소사구협의회	○ 자연보호활동전개	2,000	
오 정 구 청 소 계		8,000	
게이트볼오정구지회	○ 게이트볼장비구입 등	3,000	
자연보호오정구협의회	○ 자연보호활동전개	2,000	
민주평통오정구지회	○ 운영비보조	3,000	

【붙임 3】

98. 설계·용역 후 미활용 내역

(단위 : 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목 적	계약금액	계약기간	활용여부	활 용 하 지 못 한 이 유	비 고
합 계	8건		13,610,935,000				
정 책 기 획 실	부천시 태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 당성조사 용역	상동개발지구 내 영 상 태 마 파 크 공 원 을 조성하여 부천을 영 상산업도시로 발전시 키기 위함	203,785,000		미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사 업성 없는 관계로 중단	
정 수 과	공업용수 펌프 설 치 및 관로 연결공 사 실시설계	한강취수장에서 공업 용수 공급 중 문제발 생시 공업용수의 원 활한 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1단계 관 로와 연결하여 비상 시 공급	11,029,000	98. 3. 5 ~ 98. 4. 23	미활용	공업용수를 2006년에 준 공 예정인 광역상수도 6 단계 통수시 공급코자 하 였으나, 99. 5월 통수된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의 여유수량으로 공급코자 5 단계 관로와 공업용수 관 로를 연결시키고 본 공사 를 보류하였음	
하 수 과	굴포천하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2차)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1-2-7)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전면책입 감리용역(1-2-6)	수질개선으로 시민보 건 환경 개선 수질개선으로 시민보 건 환경 개선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감리	5,042,250,000 7,336,280,000 902,770,000	98. 1. 26 ~99. 12. 23 98. 2. 6 ~99. 10. 11 98. 3. 23 ~99. 9. 20	461,860,000 (미활용) 4,641,280,000 (미활용) 435,170,000 (미활용)	장기계속사업비로 99년도 사업비임(이월) 장기계속사업비로 99년도 사업비임(이월) 장기계속사업비로 99년도 사업비임(이월)	
원미구 총무과	중4동 청사 신축공 사 기본 및 실시설 계 용역 중4동 청사 신축공 사 전기·통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4동사무소 신축 중4동사무소 신축	28,828,000 9,900,000	98. 1. 22 ~98. 3. 5 98. 1. 24 ~98. 3. 9	미활용 미활용	예산 미확보(IMF 및 동 폐지계획) 예산 미확보(IMF 및 동 폐지 계획)	
오정구 건설과	대장동 소로1류 1 호선 개설공사 실 시설계 용역	대장동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물류비용 절 감과 교통소통의 원 활도모	76,093,000	98. 3. 23 ~98. 10. 13	미활용	2000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시 심사제외	

【붙임 4】

98. 12월중 공사발주 현황

(단위 : 원)

구분 동명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자		비고
					상호	대표자	
합계	13건			86,202,800			
원미구 심곡1동	3층 칸막이설치공사	98. 12. 2	98. 12. 8	2,856,000	(주)명원건설	김기원	
원미구 중1동	동청사 도색공사	98. 12. 5	98. 12. 19	2,629,000	인홍건설	김인란	
오정구 성곡동	여월동 콘크리트 포장 및 덧썩우기공사	98. 11. 24	98. 12. 12	19,035,000	명성토건	김광표	
	보안동 신설공사	98. 12. 22	98. 12. 29	4,700,000	선동전기공사	이학도	
오정구 원종1동	보안동 신설 및 보수공사	98. 12. 12	98. 12. 24	8,987,000	칠성건설(주)	김연복	
오정구 원종2동	동청사 지하 바닥재 설치 공사	98. 12. 10	98. 12. 18	2,802,800	금강케미칼	김옥성	
오정구 고강본동	보안동 설치 및 보수공사	98. 12. 9	98. 12. 19	4,100,000	선동전기공사	이학도	
	보안동 설치 및 보수공사	98. 12. 26	98. 12. 29	2,244,000	부일전기공사	이하수	
오정구 오정동	오정동 관내 일원 하수관 설치 및 덧썩우기	98. 11. 10	98. 12. 10	16,078,000	(주)삼광기업	김기명	
	보안동 설치 및 보수공사	98. 12. 11	98. 12. 31	6,292,000	부일전기공사	이하수	
오정구 신흥동	상수도 누수공사	98. 12. 8	98. 12. 10	1,320,000	반도설비	최기철	
	도로 덧썩우기 공사	98. 12. 16	98. 12. 18	11,947,000	(주)삼광기업	김기명	
	보안동 공사	98. 10. 15	98. 12. 3	3,212,000	부일전기공사	이하수	

【붙임 5】

98. 일상경비통장잔액현황

원미구

(단위: 천원)

동계 \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잔액
총 계	2,790,522	141,307	99,189	91,649	329,626	237,652	250,172	120,938	329,741	284,874	413,191	329,239	162,944	232,544
구 계	162,620	11,565	15,420	12,708	13,847	14,742	17,014	7,086	10,289	12,099	17,009	23,019	7,822	13,552
총 무 과	36,949	5,069	5,134	658	2,580	3,345	6,155	79	81	960	5,129	6,530	1,229	3,079
사 민 봉 사 과	19,130	969	700	1,641	883	1,371	854	429	2,099	1,225	1,861	5,172	1,926	1,594
지 역 경 계 과	18,728	851	2,344	2,495	1,513	1,571	1,070	821	1,379	1,408	2,111	2,767	398	1,561
사 회 복 지 과	23,409	1,041	1,446	1,721	2,179	2,929	2,199	1,705	2,485	3,241	1,681	2,295	487	1,951
환 경 위 생 과	27,361	1,747	2,204	3,468	3,969	2,424	2,884	2,141	2,235	2,965	2,506	372	446	2,280
건 설 과	23,840	1,533	2,773	2,024	814	1,439	3,414	1,047	836	390	2,170	4,736	2,664	1,987
건 축 과	13,203	355	819	701	1,909	1,663	438	864	1,174	1,910	1,551	1,147	672	1,100
동 계	2,627,902	129,742	83,769	78,941	315,779	222,910	233,158	113,852	319,452	272,775	396,182	306,220	155,122	218,992
심 곡 1 동	118,195	4,090	3,724	4,383	15,446	9,450	12,050	7,258	15,083	11,492	17,880	11,734	5,605	9,850
심 곡 2 동	109,666	6,135	3,235	2,851	15,492	5,389	11,977	3,860	14,041	15,327	14,880	10,254	6,225	9,139
심 곡 3 동	113,066	6,130	3,161	2,792	15,037	5,349	11,242	4,950	15,268	14,223	15,168	9,310	10,436	9,422
원 미 1 동	116,019	4,997	2,260	3,755	15,051	10,213	11,794	2,634	12,902	11,122	13,337	22,713	5,241	9,668
원 미 2 동	135,028	5,622	5,444	5,395	16,945	10,678	11,373	9,691	20,280	15,037	17,309	11,649	5,605	11,252
소 사 동	114,210	5,168	4,169	3,857	13,047	10,828	9,706	4,831	14,710	12,248	16,881	10,889	7,876	9,518
역 곡 1 동	131,813	3,412	4,078	3,643	16,956	7,229	16,881	5,173	13,150	13,794	20,334	13,503	13,660	10,984
역 곡 2 동	125,575	4,172	5,292	3,644	15,739	10,316	10,722	4,547	13,211	16,718	18,027	13,174	10,013	10,465
춘 의 동	204,119	6,270	7,680	6,245	18,538	30,281	14,645	6,298	26,753	14,887	44,426	19,365	8,731	17,010
도 당 동	181,153	7,969	5,366	5,208	25,153	15,845	18,576	7,952	21,632	16,613	21,221	20,533	15,085	15,096
약 대 동	138,879	4,204	3,654	3,712	19,148	18,970	12,942	6,616	16,354	10,733	23,925	12,004	6,617	11,573
충 동	169,856	5,241	3,097	2,722	20,488	10,327	14,791	12,629	24,215	16,932	24,592	28,960	5,862	14,155
충 1 동	169,183	4,675	8,464	7,707	19,542	14,707	14,265	5,397	19,341	16,807	18,104	28,754	11,420	14,099
충 2 동	168,894	42,245	5,598	6,078	20,085	9,307	13,864	6,275	16,482	13,369	14,110	14,062	7,419	14,075
충 3 동	142,212	3,374	3,225	3,530	15,654	16,799	12,151	7,879	20,179	15,341	26,796	11,276	6,008	11,851
충 4 동	195,893	2,423	4,130	3,930	17,454	18,959	13,894	6,730	21,368	27,690	38,065	26,952	14,298	16,324
상 동	163,137	6,633	6,451	5,918	18,507	10,011	11,612	7,524	17,009	17,562	34,200	19,004	8,706	13,595
상 1 동	131,004	6,982	4,741	3,571	17,497	8,252	10,673	3,608	17,474	12,880	16,927	22,084	6,315	10,917

【붙임 5】

98. 일상경비통장잔액현황

(단위 : 천원)

소사구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잔액
동계															
총 계		1,126,656	75,341	50,961	152,191	75,108	75,452	167,005	48,698	45,914	184,234	108,657	77,944	65,151	93,888
구 계		120,254	7,135	12,366	11,701	10,520	7,657	6,987	8,724	9,115	8,829	15,722	16,872	4,626	10,021
총 무 과		27,943	1,793	2,989	4,014	3,849	1,049	1,560	3,094	1,570	2,586	2,820	1,905	714	2,329
시 민 봉 사 과		20,796	-	650	1,324	641	761	705	1,620	2,733	716	5,441	4,695	1,510	1,733
지 역 경 제 과		21,328	1,850	2,093	2,687	1,508	1,470	1,921	1,596	967	985	1,740	2,845	1,666	1,777
사 회 복 지 과		13,077	735	1,235	1,350	1,170	1,353	993	1,166	776	1,667	702	1,819	111	1,090
환 경 위 생 과		14,061	1,274	2,170	968	1,039	1,160	686	414	955	1,326	2,100	1,900	69	1,172
건 설 과		14,299	1,145	2,186	799	1,540	1,356	639	589	1,251	1,221	2,237	1,131	205	1,192
건 축 과		8,750	338	1,403	559	773	508	483	245	863	328	682	2,577	351	729
동 계		1,006,402	68,206	38,595	140,490	64,588	67,795	160,018	39,974	36,799	175,405	92,935	61,072	60,525	83,867
심곡본1동		102,341	6,014	3,841	20,394	3,441	7,420	15,459	3,194	1,851	26,811	7,103	5,157	1,656	8,528
심곡본동		123,476	10,342	4,650	16,962	6,248	8,004	18,506	5,322	6,225	19,229	10,724	7,785	9,479	10,290
소사본1동		74,324	4,439	1,625	10,080	3,502	7,303	14,022	2,583	2,838	13,761	6,995	4,218	2,958	6,194
소사본2동		95,118	6,238	5,329	11,474	4,022	5,559	15,028	4,641	5,771	17,563	8,103	6,573	4,817	7,927
소사본3동		97,757	6,758	2,211	15,842	4,900	7,200	16,096	4,345	4,668	20,400	9,880	4,937	520	8,146
법박동		117,481	2,846	2,411	11,115	13,208	9,327	12,906	3,261	2,764	10,630	24,641	6,714	17,658	9,790
괴안동		114,090	4,624	4,557	13,873	8,525	6,016	23,857	5,142	4,991	22,737	7,499	4,460	7,809	9,508
역곡3동		106,576	8,902	6,684	14,581	6,067	6,574	15,672	3,998	3,258	16,819	8,971	9,435	5,615	8,881
송내1동		90,284	6,786	4,132	12,951	10,924	4,945	15,013	3,408	2,751	14,217	5,988	4,409	4,760	7,524
송내2동		84,955	11,257	3,155	13,218	3,751	5,447	13,459	4,080	1,682	13,238	3,031	7,384	5,253	7,080

【붙임 5】

98. 일상경비통장잔액현황

(단위: 천원)

오정구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잔액
동계														
총 계	1,790,826	138,056	141,470	142,877	130,580	164,810	215,620	134,108	174,337	159,274	148,302	176,189	65,203	149,236
구 계	208,797	14,304	19,163	14,675	16,363	19,475	16,940	17,351	22,980	20,940	20,353	23,885	2,368	17,400
총 무 과	76,785	4,936	7,330	4,822	5,345	6,717	6,541	6,621	8,769	5,761	8,930	10,285	728	6,399
시 민 봉 사 과	25,818	2,306	2,599	1,042	3,066	2,369	1,555	3,081	2,566	2,578	2,000	2,650	6	2,152
지 역 경 제 과	38,766	2,087	2,973	2,997	3,507	4,209	3,195	2,889	4,544	4,655	3,420	2,941	1,349	3,231
사 회 복 자 과	17,796	777	1,208	1,355	959	1,721	1,368	1,563	2,601	3,011	1,291	1,933	9	1,483
환 경 위 생 과	27,181	1,812	3,158	1,611	1,264	2,434	2,671	2,366	2,761	2,675	3,052	3,377	0	2,265
건 설 과	15,329	2,000	1,372	2,503	1,916	1,258	445	492	1,032	1,421	1,190	1,484	216	1,277
건 축 과	7,122	386	523	345	306	767	1,165	339	707	839	470	1,215	60	594
동 계	1,582,029	123,752	122,307	128,202	114,217	145,335	198,680	116,757	151,357	138,334	127,949	152,304	62,835	131,836
성 곡 동	267,707	37,533	20,249	20,315	19,150	23,666	31,530	21,232	26,534	18,963	16,415	26,999	5,121	22,309
원 종 1 동	204,804	27,522	16,350	17,730	15,758	18,496	24,432	14,664	20,972	14,723	13,781	18,526	1,850	17,067
원 종 2 동	201,606	3,745	15,206	16,161	14,549	19,511	25,200	14,935	22,690	18,742	25,851	18,646	6,370	16,801
고 강 본 동	262,158	35,337	17,457	17,969	16,406	23,173	24,516	15,721	20,433	17,564	22,178	16,346	35,058	21,847
고 강 1 동	158,148	4,275	11,739	13,924	12,576	19,361	25,611	12,493	12,691	18,561	11,523	12,581	2,813	13,179
오 정 동	219,974	9,419	17,695	16,306	14,505	18,040	30,992	16,109	18,278	24,265	14,207	33,071	7,087	18,331
신 흥 동	267,632	5,921	23,611	25,797	21,273	23,088	36,399	21,603	29,759	25,516	23,994	26,135	4,536	22,303